

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

韓国語

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(이하 「취학 지원금」)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신입 1 학년생은 2 회(4 월과 7 월)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(7 월 수속은 매년 필요합니다).

지급대상의 요건

- 보호자 등의 「과세 표준액(과세 소득액)×6% - 시·정·촌민세의 조정 공제 금액(정령지정 도시에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 조정 공제 금액에 3/4 를 곱한 금액)」으로 계산되는 산정 기준액이 304,200 엔 미만일 것.
연수입으로는 910 만엔 정도이지만,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.
4 월은 전년도 분의 액수, 7 월은 금년도 분의 액수로 판단합니다.
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합니다.
-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.
정시제·통신제 과정의 경우는 48 개월입니다. 국립·공립·사립 모두 해당합니다.
- 신청서와 「^{まいなんばんごう}マイナンバーカード, 개인번호카드」의 복사본 등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할 것.

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수업료는 4 분기로 나뉘어서 납부하게 됩니다. 금액은 한 해 동안 전일제 118,800 엔, 정시제는 32,400 엔, 통신제는 1 단위 당 330 엔입니다. 취학 지원금의 수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. 4 월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7 월 상순(예정)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.

수속에 필요한 「^{まいなんばんごう}マイナンバーカード, 개인번호카드」의 복사본 등에 대하여

①개인번호가 기재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.

- 「^{まいなんばんごう}マイナンバーカード, 개인번호카드」 뒷면
- 개인번호가 기재된 「^{じゅうみんひょう}住民票, 주민표」 등(※1)
- 「^{まいなんばんごう}マイナンバー通知カード, 개인번호 통지 카드」(※2)

※1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는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,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·성명·주소·생년월일과 발행한 시·구·정·촌의 공인 및 발행일을 확인 가능한 것이 필요합니다.

※2 「^{まいなんばーつうちかーど}マイナンバー通知カード, 개인번호 통지 카드」는 2020년 5월 25일에 시행된 디지털 수속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나,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기재 사항(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성별·개인번호)에 변경이 없는 경우
- 법 시행 전(2020년 5월 25일 이전)에 기재 사항의 변경 수속을 한 경우

◎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)를 제출해 주십시오. 보호자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재학 기간 중의 「^{まいなんばーかーど}マイナンバー카드, 개인번호카드」 또는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②생활보호 수급 세대인 분은 「^{せいかつほごじゅきゅうしょうめいしょ}生活保護受給証明書, 생활보호 수급증명서」를 제출해 주십시오.

- 「^{せいかつほごじゅきゅうしょうめいしょ}生活保護受給証明書, 생활보호 수급증명서」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 필요합니다.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.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상기 ②의 증명 서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신청 시 「^{せいかつほごじゅきゅうしょうめいしょ}生活保護受給証明書, 생활보호 수급증명서」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※①·② 서류 중 어느 것 하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통학 중인 학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.

《주의해 주십시오!》

취학 지원금 신청 시에는 수입에 따른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.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개인번호를 제출해 주시더라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결과 통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

장학을 위한 급부금(이하 「장학급부금」)은 보호자 등 전원(부모양쪽)의 「도·부·현 소득할주민세액」과 「시·정·촌 소득할주민세액」을 합산한 금액이 0 엔인 세대(이하 「비과세 세대」) 또는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게,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신청수속은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·도·부·현에서 연 1 회(7 월) 행합니다.

지급액(연액)은 생활보호 수급 세대가 32,300 엔, 비과세 세대가 전일제·정시제 경우 110,100 엔, 통신제는 48,500 엔입니다.

단, 비과세 세대에서 부양받고 있는 형(오빠), 누나(언니)가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고등학생 외에 15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중학생 이외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141,700 엔입니다. 이 경우 가족의 부양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.

취학 지원금과 장학급부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, 보호자 등 전원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장학급부금을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.

또한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0 년도부터 통상적인 신청에 더하여 아래 2 가지 제도를 새로 수립했습니다.

①신입생에게 앞당겨 급부: 신입생이 있는 세대로 2020 년도 비과세 세대에게, 장학급부금의 일부를 조기 지급합니다.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통상적인 신청과는 별개로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②가계 급변 세대에 대한 지원: 2021 년도 비과세가 아닌 세대로, 올해 들어 보호자 등 전원의 수입이 비과세 세대 수준으로 줄어든 세대에게, 장학급부금을 지급합니다. 이 제도는 통상적인 신청의 대상이 아닌 세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아래 4 개 종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1.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

2. 수입이 줄어들기 이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, 2021 년도

과세증명서(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)

3. 수입이 줄어든 이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(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)

4.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증 복사본 또는 부양가족 인원수가 기재된 과세증명서

문의처: 학교 또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시설재무과(06-6941-0351)